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억 3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 5억 9천 5백만원
- 실제수납액 : 5억 7천 9백만원
- 불납결손액 : 0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천 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7.2%(전년도 98.7%)임.

〈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39	595	579	16	97.2
세외수입	139	595	579	16	97.2
경상적 세외수입	109	97	88	9	90.7
공유재산임대료	57	0	0	0	-
기타사용료	52	95	86	9	90.5
기타이자수입	0	2	2	0	100
임시적 세외수입	30	498	491	7	98.6
시·도비반환금수입	0	41	38	3	92.7
그외수입	30	455	452	3	99.3
지난년도 수입	0	2	1	1	5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425억 5천 5백만원
- 예산증감 : 20억 1천 2백만원
- 예산현액 : 445억 6천 8백만원
- 지출액 : 421억 4천 7백만원
- 이월액 : 9억 6백만원
- 불용액 : 15억 1천 6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4%(전년도 12.8%)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천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6천 5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청년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44,568	42,147	906	1,515	3.4
사업예산계	44,537	42,116	906	1,515	3.4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44,537	42,116	906	1,515	3.4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33,660	32,406	179	1,075	3.2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32	1,520	0	212	12.2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자지원	403	386	0	17	4.2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120	120	0	0	0.0
서울 청년활동 보장	21,010	20,863	0	147	0.7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3,396	3,270	0	126	3.7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6,509	5,940	0	569	8.7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490	307	179	4	0.8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10,877	9,710	727	440	4.0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3,749	3,713	0	36	0.9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332	292	0	40	12.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5,202	4,260	727	215	4.1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30	127	0	3	2.4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894	845	0	49	5.5
	청년 인생설계 학교	300	253	0	47	15.8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	50	0	0	50	100.0
	청년활동 공간 청춘빨당 리모델링	220	220	0	0	0.0
일 반 예 산 계		31	31	0	0	2.4
기 본 경 비		31	31	0	0	2.4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대행기관 지정 추진을 위하여 「청년 인생설계 학교」 내에서 동계목 간 전용으로

2억원

총 1건, 2억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무중력지대 도봉 조성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시설비) 사업에서

5천 2백만원

총 1건, 5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4건, 9억 5백만원

○ 명사이월

당초 무중력지대 강남 준공('18.12월) 이후 지출 예정이었으나,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공법변경 등으로 준공 지연('19. 3월)되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비(자산및물품취득비) 명사이월 4천 7백만원
총 1건, 4천 7백만원

○ 사고이월

무중력지대 강남 설치 부지 변경 등 공사가 일부 지연되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비(감리비) 6백만원,

무중력지대 강남 설치 부지 변경 등 공사가 일부 지연되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비(시설비) 6억 7천 2백만원,

청년포털 구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9.4.22.)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사업비(전산개발비) 사고이월 1억 7천 9백만원,

총 3건, 8억 5천 8백만원,

총 4건, 9억 5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말 청년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28개, 현재액 5천 6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17 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8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30		수량	3	25	0	0	0	25	0	0	0	0	0	28
						금액	6	50	0	0	0	50	0	0	0	0	0	56
1	4010 1701	냉방기	대	3	9	수량	0	3	0	0	0	3	0	0	0	0	0	3
						금액	0	18	0	0	0	18	0	0	0	0	0	0
2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16	6	수량	2	14	0	0	0	14	0	0	0	0	0	16
						금액	2	14	0	0	0	14	0	0	0	0	0	16
3	4410 1501	복사기	대	4	6	수량	1	2	0	0	0	2	0	0	0	0	0	3
						금액	4	8	0	0	0	8	0	0	0	0	0	12
4	4410 1503	다기능 복사기	대	1	6	수량	0	1	0	0	0	1	0	0	0	0	0	1
						금액	0	1	0	0	0	1	0	0	0	0	0	1
5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6	8	수량	0	5	0	0	0	5	0	0	0	0	0	5
						금액	0	9	0	0	0	9	0	0	0	0	0	10

II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및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2%로 전년도(98.7%)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임.
-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한(시·도비 반환금 3천 8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198만원, 지난년도 수입 90만원)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3천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억 9천 8백만원(1,636.7%)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는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전액 미수납되었음.
 -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청년청의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공유재산 관리비’ 수입과 함께 ‘기타사용료’로 회계 처리함에 따른 것임.
-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 집행과목을 경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임.

- 향후, 청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년청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9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 비 수납률 (C/B)	예산현액대 비 수납률 (C/A)
합 계	603	139	595	579	16	97.3%	416.5%
보조금	500	0	0	0	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0	0	0	0	0	-	-
경상적세외수입	103	109	97	88	9	90.7%	80.7%
공유재산임대료	42	57	0	0	0	-	-
기타사용료	61	52	95	86	9	90.5%	165.4%
기타이자수입	0	0	2	2	0	100.0%	-
입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0	30	498	491	7	98.6%	1636.7%
시도비반환금수입	0	0	41	38	3	92.7%	-
그외수입	0	30	455	452	3	99.3%	1506.7%
지난년도 수입	0	0	2	1	1	50.0%	-

-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청년청 입주단체의 임대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청년청에는 55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액(180만원)이 있는바, 청년청은 청년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경우는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9 회계연도에는 '기타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여전히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기타 사용료	61,500	52,428	85,863	0	53,924	0	48,750
기타 이자수입	0	0	1,980	0	0	0	0
시도비 반환금 수입	0	0	37,597	0	0	0	0
그외수입	0	30,000	452,282	0	95,476	0	101
지난연도 수입	0	0	928	0	0	0	0

-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3천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은 4억 2천 2백만원(1506.7%)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이 4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청년청의 '그외수입'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의 미반납 및 민간위탁금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등 3건이 미납되었으며,
 - 이미 수납은 되었으나, 청년청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간이 오랜된 기관인 '청년허브'의 변상 건을 비롯한 2017년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비 과도한 집행잔액 반납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사업 계획 및 집행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음.

〈청년청 소관 ‘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주민 /법인명	사유
그외수입	5,534,810		한국 장학재단	2017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집행잔액
그외수입	4,880		청년지갑트레 이닝센터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보조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12,928,930		동작신용 협동조합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집행잔액
그외수입	25,043,750		마을	2017년 청년활력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5,611,470		한국장학 재단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집행잔액
그외수입		101,860	김정찬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39,737,750		쉐어하우스 우주(주) 외 1	2017년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비 잔액
그외수입	10,654,950		(주)어반플레이	
그외수입	18,516,550		(주)라솜 외 1	
그외수입	28,193,070		(주)인라이튼	
그외수입	38,782,030		(주)트리플래닛	
그외수입	33,079,350		(주)엔피프틴	
그외수입	2,599,160		(주)피치마켓	
그외수입	26,124,630		(주)에이치지이니 셔티브	
그외수입	17,876,980		레이즈 지엘에스(주)	
그외수입	10,766,590		(주)케이오에이	
그외수입	10,318,290		(주)마인드 디자인	
그외수입	58,121,190		(주)프렌트립	
그외수입	28,229,000		(주)위누	
그외수입	17,454,990		(주)터치포굿	
그외수입	27,092,490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17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그외수입	1,130		한국장학재단	2017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그외수입	8,730		청년지갑트레 이닝센터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 관협력 활성화 이자발생액
그외수입	7,600		동작신용 협동조합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 관협력 활성화 이자발생액
그외수입	33,438,400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 동 이전공간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그외수입	329,510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17년도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 변상건
그외수입		2,297,590	김정찬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그외수입		1,013,240	김정찬	2017년 수입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1,826,220		(사)마을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2017년 4대보험 정산 잔액 및 중간퇴사자 퇴직금)

- 청년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사업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환불금 등 불필요한 세입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중 81건에 1천 6백 80만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미수납 건수와 미수납 규모도 급격히 증가(2016년 4건 164만원, 2017년 14건 2백만원)하고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구분	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6	건수	4	-	4	-	-	-	-
	금액	1,642	-	1,642	-	-	-	-
2017	건수	14	11	3	-	-	-	-
	금액	2,022	907	1,115	-	-	-	-
2018	건수	81	7	53	18	3	-	-
	금액	16,807	51	4,600	6,019	6,137	-	-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

- 2018회계연도 청년청의 예산 전용은 1건에 2억원이고, 변경사용은 1건에 5천 2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 인생설계 학교	민간 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2018- 05-31	0	0	0
	사무관리비	100,000		200,000		300,000	252,618	47,382 (15.8%)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99,650	△52,000		2018- 04-09	47,650	0	0 (0.0%)	명사이월 47,650 (100.0%)
	시설비	1,010,000		52,000		1,062,000	331,371	58,343 (5.5%)	샤고이월 672,286 (63.3%)

1)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등으로 인한 전용

-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업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갭이어(gap year)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에 신규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었음.
 - 당초 예산 편성시 청년청(당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하는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 산하 재단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대행” 추진(수의계약)하였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액 전용이후에 과도한 집행잔액(4천7백만원, 15.8%)이 발생한바 있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 인생설계 학교	민간 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2018- 05-31	0	0	0
	사무관리비	100,000		200,000		300,000	252,618	47,382 (15.8%)

- 동 사업은 공공부문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 등에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청년청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예산의 확보에만 치중하고 사업 집행은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사업 관련 자문회의 결과> 참고

〈자문의견〉

- 경험자체가 자산화 되진 않으므로, 정교한 학습설계로 성공여부 결정 (000위원)
-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000위원)
-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한 계층」에 효과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추천하는 사업인지 여부(000위원)
- 공공영역에서 성과를 간과할 순 없지만, 성과에 연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결과물은 무엇인지 여부(000위원)
 - 효과적인 프로그램 발굴과 당사자의 참여율, 결과보다 과정 중시(보고서 등)
- 개별 평가가 어렵다면, 사회적 성과로 측정(협력기관의 간접적 산출물 등) 할 수 있는지 여부(000위원)
- 껍어이를 시간 낭비가 아닌 생의 설계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합의 필요

○ 특히, 동 사업은 민간에 맡길 경우 ‘용역’ 사업이라기 보다는 ‘민간위탁’에 가까운 사업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사무를 ‘대행’ 하도록 한 것은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관련 규정 》

▷ 「지방자치법」 제104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용역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방식이 적정함
-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용역 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1)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 대 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간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정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정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법제처 2015.4.2. 15-0080)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¹⁾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민간대행은 민간위탁²⁾과는 개념상의 책임 소재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위탁과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8년 7월)

- 한편, 동 사업은 2019년에도 동일하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에 1년 단위로 사무를 '대행' 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집행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자신의 정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

2)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한 변경사용 이후 과도한 사고이월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등 청년을 위한 종합활동공간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임.
- 동 사업 중 ‘무중력지대 대방’ 공간을 ‘도봉’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5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변경사용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5천 2백만원) 명사이월 하여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동 통계목의 예산집행실적은 전무하다고 하겠음.
- 또한 변경사용한 ‘시설비’의 경우에는 5천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나 5천 8백만원을 불용처리(예산현액 10억 6천 2백만원 중 3억 3천 1백만원을 집행하고, 6억 7천 2백만원은 사고이월처리)하였는바, 예산의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는 2017년도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2017년,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2018년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99,650	△52,000		2018- 04-09	47,650	0	0 (0.0%)	명사이월 47,650 (100.0%)
		시설비	1,010,000		52,000		1,062,000	331,371	58,343 (5.5%)	사고이월 672,286 (63.3%)
2017년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370,000	△80,000		2017- 11-02	290,000	0	20,000 (6.9%)	명사이월 270,000 (93.1%)
		시설비	1,318,000		80,000		1,398,000	250,319	130,012 (9.3%)	사고이월 1,017,668 (88.7%)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 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6,000		2017- 04-04	294,000	64,110	102 (0%)	사고이월 229,786 (99.9%)
		감리비			6,000		6,000	0	6,000 (100.0%)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150,000		2017- 04-04	50,000	1,704	48,295 (96.6%)	
		사무 관리비	50,000		150,000		200,000	167,463	32,536 (16.3%)	
		자산및 물품 취득비	150,000	△8,000		2017- 04-04	142,000	0	75,858 (53.4%)	사고이월 66,141 (46.6%)
		감리비			8,000		8,000	0	8,000 (100%)	

○ 동 사업은 매년 변경사용과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변경사용 및 전용 이후에도 불용 규모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변경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2017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825,780	△27,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사무관리비	272,000		27,000		299,000	169,512	107,348 (43.3%)	22,139 (7.4%) (사고 이월)
	민간위탁금	798,780	△16,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공공운영비	180,000		16,000		196,000	3,819	192,180 (98.1%)	

- 특히, 변경사용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키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음.
- 청년청은 청년 공간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 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행태라고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청년 공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바,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 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청년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월 등 지양 필요

- 청년청의 2018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등 총 4건에 9억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업에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음.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8년	청년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사업	적산 개발비	483,727	480,249	300,875	0	179,374	3,478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시설비	2,309,455	2,247,295	1,574,443	0	672,286	62,726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36,218	26,218	19,739	0	6,479	10,000	
2017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17,624	355,273	355,273	47,650	0	14,702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사무 관리비	299,000	191,651	169,512	0	22,139	107,348	
		시설비	1,398,000	1,267,987	250,319	0	1,017,668	130,01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60,000	16,218	0	0	16,218	43,781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부권 주민 참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0,000	0	0	270,000	0	20,000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0	229,786	10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서울시 청년교류 공간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0	0	99,974	25	
시설비		400,000	308,153	17,848	0	290,305	91,846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2,000	66,141	0	0	66,141	75,858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0	0	100,000	0	0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은 3년 연속 부지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 전액(4천 7백만원, 100%)을 명시이월시키고, ‘시설비’는 예산 중 6억 7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63.3%)시켰음.
- 2017년에도 ‘시설비’는 예산 중 10억 1천 7백만원(88.7%)을 사고이월시키는 등 매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 주민참여)”사업도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의 부지 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6년에 4억 9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처리하였고, 2017년에 재차 사고이월(시설비 2억 2천 9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천 9백만원)시킨바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0	0	100,000	0	0	
2017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 주민 참여)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0	229,786	102	변경비용 6백만원후 사고이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0	0	99,974	25	

-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에 대체로 양호하게 집행되었으나, 명시이월 예산의 경우는 이월된 예산 전액(‘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원, 2017년)이 집행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 사례도 있는 상황임.

〈2016회계연도이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차년도 집행액 (집행률)
2016→2017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사무관리비	94,000	8,172 (8.7%)
2016→2017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64,110 (21.4%)
2016→2017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0 (0.0%)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22,139	22,139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시설비	1,247,455	1,243,072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감리비	16,218	16,218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974	99,963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시설비	290,305	283,746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142	66,142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상위계획)이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청년청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1) 민간위탁 사업의 과도한 전용 및 변경사용

-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9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99억 3천 9백만원 중 불용액은 7억 2천 5백만원(불용률 7.3%)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시작일	종료일	위탁구분					
계	-	-	-	9,939,813	9,739,550	9,140,535	725,078	7.3%
청년허브 운영	'12.12.14	'14.12.13.	신규	3,749,000	3,713,419	3,227,334	486,085	13.0%
	'14.12.14	'17.12.31.	재계약					
	'18. 1. 1.	'20.12.31.	재위탁					
무중력지대 G밸리	'17. 1. 1.	'19.12.31.	재계약	473,812	473,812	460,362	13,450	2.84%
무중력지대 대방동	'18. 1.22.	'19.12.31.	재위탁	490,543	490,543	490,543	-	-
무중력지대 양천	'18. 2.12.	'19.12.31.	신규	300,966	300,964	285,747	15,217	5.06%
무중력지대 도봉	'18. 4. 1.	'19.12.31.	신규	283,357	280,161	246,980	33,181	11.84%
무중력지대 성북	'18. 3.19.	'19.12.31.	신규	331,803	331,803	323,512	8,291	2.5%
무중력지대 서대문	'18. 3. 1.	'19.12.31.	신규	383,975	383,975	382,905	1,070	0.26%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16. 7.15.	'17.6.30.	신규	3,395,657	3,270,123	3,228,402	125,534	3.7%
	'17. 8. 1.	'18.12.31.	재계약					
	'19. 1. 1.	'21.6.30.	재계약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18. 2. 7.	'19.12.31	신규	530,700	494,750	494,750	42,250	7.9%

- 청년허브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2018년 10월 16일)은 5건에 2억 5천 1백만원임.
- 사무실 외벽 창문 샷시 교체와 장애인 화장실 기능개선 및 노후 pc 교체를 위해 '일반운영비(88만원)' 및 '여비(2천3백만원)'를 '시설비'(2천9백만원) 및 '자산취득비'(2백만원)로 변경사용하였으며,

- ‘일반운영비’는 감액한 이후에도 4천 4백만원(1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변경사용으로 증액(2백만원)하였으나 집행잔액(378만원)이 변경사용으로 인한 증액분보다 크게 발생하는 등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음.
- 민간위탁 사업 중 연구 및 공론장 수요 증가,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위해 “청년활동 지원” 사업 및 “청년공간 지원”, “청년교육”사업 에서 “정책 및 활동연구”, “사회적 자원 연계”, “국내외 교류” 사업으로 변경 사용하였음.
-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감액 변경사용(1억3천만원) 이후에도 1억 6천 3백만원(22%)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청년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감액 변경사용(3천 5백만원) 이후에도 2천 6백만원(1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당초 편성한 사업의 실소요예산에 대한 부실한 설계에 기인할 뿐 아니라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경사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허브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일반운영비	247,750	△8,850		18.10.16	238,900	194,178	44,722 (19%)
	자산취득비	15,900		2,000	18.10.16	17,900	14,115	3,785 (21%)
	여비	37,792	△23,000		18.10.16	14,792	11,743	3,049 (21%)
	시설비	39,958		29,850	18.10.16	69,808	69,543	265 (0.4%)
사업비	정책 및 활동연구	100,000		100,000	18.10.16	200,000	198,487	1,513 (1%)
	청년활동지원	870,000	△130,000		18.10.16	740,000	576,835	163,165 (22%)
	청년공간지원	280,000	△35,000		18.10.16	245,000	218,739	26,261 (11%)
	청년교육사업	100,000	△55,000		18.10.16	45,000	36,075	8,925 (20%)
	사회적자원연계	70,000		50,000	18.10.16	120,000	116,499	3,501 (3%)
	국내외교류	60,000		70,000	18.10.16	130,000	128,665	1,335 (1%)

- 청년허브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액은 4억 9천 7백만원 (10.9%)으로 불용규모가 크고, 2018회계연도에도 4억 8천 6백만원 (13%)을 불용시키는 등 연속적으로 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 위탁금 예산 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청년청의 지도 점검시 매년 사업관리 부적정, 청년허브 대관규정 부적정, 채용시험 서류전형 부적정 등 미흡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참고자료 1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2017년, 2018년),
 - 민간위탁 사무의 자의적 집행이 아닌 당초 목적과 법령에 근거한 충실한 사무의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바, 신규 위탁시 이러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무중력지대 G밸리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570만원, 변경사용은 3건에 340만원임.
-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시설관리비로의 사용을 위해 사업비에서 57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3건을 변경사용(340만원)하였음.
-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무중력지대 G밸리 전용 현황〉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감액	증액				
사업비 (청년활동지원 및 지역기반조성)	37,772	5,700		시승인 (18.11.29.)	32,072	29,029	3,043 (10.4%)
운영비 (공공운영비)	41,374		5,700		47,074	46,701	327 (0.6%)

〈무중력지대 G밸리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사업비	청년참여형 일터살터 프로젝트	44,729	△2,273		센터장 승인 (18.07.05)	42,456	40,083	2,372 (5.5%)
	G밸리멘토넷 프로그램	17,000		2,273		19,273	18,991	282 (1.4%)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42,509		678	센터장 승인 (18.09.14)	43,187	42,975	211 (0.4%)
	청년문화창 의 프로그램 운영	7,900		463		8,363	8,354	8 (0.1%)
	무중력지대 브랜드 구축 및 홍보	8,960	△1,140			7,820	7,761	58 (0.7%)

-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1건에 1천 1백만원임.
- 화장실 개선 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35만원을, 공간 설비 및 가구 구매를 위해 '공공운영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61만원을, 판촉물 제작 위해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로 120만원을, 직원 교육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서 '교육훈련비'로 158만원을, SNS 홍보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으로 235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변경사용은 모두 11월에 승인되었으며,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 승인과 센터장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의 규모에 따라 30% 이하의 전용과 변경사용의 경우는 센터장 승인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센터장 승인의 변경사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무중력지대 대방동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관리비	99,158	△1,350		시승인 (11.06)	96,726	95,483	1,243 (1.25%)
	공공운영비	36,663		1,350	시승인 (11.06)	35,446	35,694	-248 (-0.68%)
			△985		센터장승인 (11.30)			
	회의비	1,760	△300		시승인 (11.06)	1,260	989	271 (15.40%)
	교육훈련비	5,100	△2,000		시승인 (11.06)	5,100	4,685	415 (8.14%)
	국내여비	3,924	△326		센터장승인 (11.30)	2,322	1,340	982 (25.03%)
자산취득비	5,000		2,300	시승인 (11.06)	8,611	8,611	0 (0%)	
			1,311	센터장승인 (11.30)				
사업비	특화사업	25,800	△1,200		시승인 (11.06)	25,800	24,038	1,762 (6.83%)
	홍보사업	58,694		1,200	시승인 (11.06)	61,365	61,365	0 (0%)
운영비	업무추진비	5,040	△377		센터장승인 (11.30)	4,938	4,560	378 (7.50%)
	국내여비	3,924	△1,208		센터장승인 (11.30)	2,322	1,340	982 (25.03%)
	교육훈련비	5,100		1,585	센터장승인 (11.30)	5,100	4,685	415 (8.14%)
사업비	지원사업	22,502	△812		센터장승인 (11.30)	22,502	21,001	1,501 (6.67%)
	네트워크	37,389	△1,135		센터장승인 (11.30)	37,389	37,213	176 (0.47%)
	특화사업	25,800	△412		센터장승인 (11.30)	25,800	24,038	1,762 (6.83%)
	홍보사업	58,694		2,359	센터장승인 (11.30)	61,365	61,365	0 (0%)

○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경우 민간위탁금 교부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18년 민간위탁금 정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 사업간 자의적인 변경 등을 통해 총 집행액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산총괄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계	490,543,007	490,543,000	490,543,000	0	70,293	
인건비	196,251,259	195,820,313	195,820,313	0	-	
운영비	150,793,355	151,374,773	151,374,773	0	-	
사업비	143,489,393	143,347,914	143,347,914	0	-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1. 기본급	기본급	118,005,617	117,574,677	117,482,398	92,279
	2. 제수당	명절휴가수당	9,118,517	9,118,517	8,869,111	249,406
		가족수당	1,540,000	1,540,000	1,762,581	-22,581
		정액급식비	6,151,935	6,151,935	6,114,193	37,742
		관리업무수당/직급보조수당	6,832,225	6,832,225	6,803,192	29,033
	3.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10,904,030	10,904,030	11,089,128	-185,098
	4. 4대보험료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12,182,195	12,182,195	12,182,976	-781
	5. 2017년 총당금	직원퇴직충당금	12,446,000	12,446,000	12,446,000	0
		12월 급여	5,332,390	5,332,390	5,332,390	0
		4대보험 총당금	13,738,350	13,738,350	13,738,350	0
소계		196,251,259	195,820,313	195,820,313	0	
운영비	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442,000	8,008,708	9,560,088	-1,551,380
		임차료	83,932,070	83,932,070	83,643,790	288,280
		운영/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800,000	1,000,000	700,000	300,000
		피복비	440,000	440,000	990,000	-550,000
		급량비	2,112,000	2,112,000	598,900	1,513,100
	2.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대	272,800	272,800	558,400	-285,600
		전화 및 인터넷, TV 사용료	2,449,200	2,449,200	2,517,970	-68,770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14,092,570	12,485,644	7,945,600	4,540,044
		제세금	4,481,396	4,481,396	4,482,370	-974

		경비시스템 사용료	3,168,000	3,168,000	3,011,800	156,200	
		시설장비유지비	6,160,000	8,010,000	12,406,220	-4,396,220	
		용역비	2,102,160	2,102,160	2,046,840	55,320	
	3. 행사운영비	오픈식 일반운영비	2,720,769	2,725,500	2725500	0	
	4. 자산취득비	공간설비 및 물품구입비	5,000,000	8,611,927	8611927	0	
	5. 국내여비	시내출장	1,200,000	1,200,000	1,340,100	-140,100	
		시외출장	1,122,000	140,100	0	140,100	
	6.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0,000	240,000	195,164	44,836	
		센터장 업무추진비	1,698,390	1,320,528	1,294,284	26,24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3,071,080	-71,080	
	7. 회의비	운영/선정위원회 진행비	360,000	360,000	203,000	157,000	
		협의체 회의 진행비	600,000	300,000		300,000	
		입주단체 회의 진행비	300,000	329,100	786,100	-457,000	
		내부회의 진행비	0	0	0	0	
	8. 교육훈련비	직원 교육비	1,100,000	2,685,640	2,903,260	-217,620	
		직원 워크숍	1,000,000	1,000,000	1,055,840	-55,840	
		입주자 워크숍	2,000,000	0	0	0	
		협의체 워크숍	1,000,000	1,000,000	726,540	273,460	
	소계			150,793,355	151,374,773	151,374,773	0
	사업비	1. 지원사업	1-1. 청년활짝아카데미	2,978,000	2,870,970	2870970	0
1-2. 청춘활력소			2,261,500	2,106,076	2106076	0	
1-3. 서로서로클래스			17,263,000	16,713,389	16713389	0	
2. 네트워크 사업		2-1. PM 인건비	32,345,564	31,372,791	31372791	0	
		2-2. 무지방데이	1,300,000	1,110,910	1110910	0	
		2-3. 무중력탐사대	3,743,600	3,769,752	3769752	0	
3. 특화사업		3-1. 무중력 C-Makers	9,900,000	9,896,000	9896000	0	
		3-2. 무중력 Talk	5,500,000	5,480,313	5480313	0	
		3-3. 무중력 연구가	3,000,000	2,924,666	2924666	0	
		3-4. 무중력 파이낸셜	4,000,000	3,536,205	3536205	0	

		3-5. 미니인턴	3,400,000	2,201,000	2201000	0
4. 홍보사업		4-1. PM 인건비	33,448,709	31,188,825	31,188,825	0
		4-2. 일반홍보	17,433,620	23,060,187	23060187	0
		4-3. 무중력지대 브랜딩	4,400,000	4,375,000	4375000	0
		4-4. 청년주간-무중력캠프	2,524,400	2,741,830	2741830	0
		소계	143,498,393	143,347,914	143,347,914	0
합계			490,543,007	490,543,000	490,543,000	0

- 무중력지대 양천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천 2백만원임.
- 무중력지대 양천은 효율적인 예산 재분배 및 물품구입, 신규 사업 증설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나, 10월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 및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하여 전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무중력지대 양천 전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관리비	16,304		1,031	2018.10.19	17,335	17,315	20 (0.11%)
	공공운영비	40,324	△7,985		2018.10.19	32,339	32,133	206 (0.63%)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6		4,954	2018.10.19	8,710	8,536	174 (2.00%)
사업비	양천청년 역량강화 프로젝트	52,424	△4,000		2018.10.19	48,424	45,393	3,031 (4.73%)
	양천청년 활력증진 프로젝트	27,423		6,000	2018.10.19	33,423	33,401	22 (0.06%)

- 무중력지대 도봉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6건에 1천 2백만원임.
- 무중력지대 도봉은 ‘소모품비’, ‘시설관리비’, ‘회의운영비’ 등 예산부족과 센터 입간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

- ‘회의운영비’는 증액 변경사용(208만원) 이후에도 160만원(24.5%)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바 있으며, 회계연도를 넘어선 불법적인 변경사용 건(2019년 1월 15일, 내부승인으로 변경사용(270만원))도 있는 등 민간위탁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무중력지대 도봉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3,840	△9,646		시승인 청년정책담당관-13363호 (18.12.6.)	4,194	4,128	66 (1.6%)
	소모품비	7,607		3,462		11,069	10,473	595 (5.4%)
	시설관리비	2,200		4,100		6,300	6,300	-
	회의운영비	4,620		2,084		6,704	5,045	1,659 (24.7%)
	수도광열비	7,919	△2,749		내부승인 무중력지대 도봉-36호 (19.1.15)	5,170	4,971	196 (3.7%)
	수선유지비	914		2,749		3,663	3,663	-

- 무중력지대 성북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0건에 2천 5백만원임.
- 무중력지대 성북은 민원 해소 및 공간 조성을 위해 ‘주체형성 생태계 조성사업, ‘청년도시 사회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문화 공간운영’ 사업으로 1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공간 개선 공사를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에서 ‘공공운영비’로 62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 27일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연도 말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부적절한 변경사용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무중력지대 성북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사업비	주체형성 생태계조성	65,717	5,500		센터장 승인 11.06.	60,217	55,156	5,061 (8.40%)
	청년도시사 회프로젝트	56,409	8,600			47,809	46,867	942 (1.97%)
	청년문화 공간운영	6,640		14,100		20,740	20,678	62 (0.29%)
운영비	사무관리비	18,457	41		센터장 승인 11.06.	18,416	-	-
	업무추진비	1,300	503			797	796	1 (0.13%)
	회의비	5,450	5,332			119	119	0
	교육훈련비	804	395			409	409	0
	공공운영비	29,429		6,271		35,700	-	-
	사무관리비	18,416		4,823	센터장 승인 12.27.	23,239	23,227	12 (0.05%)
	공공운영비	35,700	4,823			30,876	30,750	126 (0.41%)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의 경우 ‘사무관리비’의 등에서 627만원을 증액 변경사용(2018.11.6.) 했으나,
-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도 말(2018.12.27.)에 ‘공공운영비’에서 480만원을 재차 감액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음.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5건에 2천 4백만원으로, 15건 모두 2018년 12월 12일에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되었음.
- 무중력지대 서대문은 인건비 제수당 추가 지급분 발생에 따라 ‘기본급’, ‘퇴직충당금’, ‘보험료’에서 ‘제수당’으로 27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공간 운영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시설비, 저작권료가 추가로 발생했고, 개관초기 프로그램 운영비용 일부를 이산화하면서 신설된 비목을 위해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각각 960만원, 81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가구, 가전, 조명 인테리어 등 추가 공간조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계획의 확대에 의한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서대문청년 활동지원”사업, “창의예술지대”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서대문 청년 프로젝트” 사업과 “공유청년지대” 사업으로 각각 23만원, 39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무중력지대 서대문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인건비	기본급	109,319	△781		센터장 승인일 18.12.12	108,538	107,772	766 (0%)
	제수당	23,600		2,783		26,383	26,383	0
	퇴직충당금	11,618	△2			11,616	11,616	0
	보험료	13,032	△2,002			11,030	11,030	0
운영비	사무관리비	26,315		9,693		36,008	35,900	108 (0%)
	공공운영비	47,745	△16,706			31,039	31,039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2	△407			1,155	1,155	0
	국내여비	475	△475		0	0	0	
	업무추진비	4,640	△195		4,445	4,445	0	
	회의비	60	△60		0	0	0	
	행사운영비			8,150	8,150	8,150	0	

사업비	서대문청년 활동지원	36,535	△2,262		34,273	34,273	0
	지속가능한 서대문 청년 프로젝트	18,345		237	18,582	18,582	0
	공유청년 지대	35,185		3,952	39,137	38,942	195 (0%)
	창의예술 지대	49,043	△1,926		47,117	47,117	0

○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9건에 1억 1천만원임.

- “마음건강지원사업”, “일상관계지원사업”, “활동경험지원사업”,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에 추가 사업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 2천 7백만원, 2천 4백만원, 770만원, 3천 9백만원을 증액전용하였으며, ‘복리후생비’도 1천만원 증액전용하였음.
- 증액 전용한 “활동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전용한 규모보다 더 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전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었으며, ‘공공운영비’는 감액 전용 하였음에도 701만원(8.2%)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음.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의 전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여비	25,200	△5,000	-	18.7.3.	20,200	19,860	339 (1.6%)
	공공운영비	166,291	△80,000	-	18.7.3.	86,291	79,183	7,107 (8.2%)
	복리후생비	4,482	-	10,000	18.7.3.	14,482	14,479	3 (0.02%)
	사무관리비	197,275	△2,000	-	18.7.3.	195,275	191,041	4,234 (2.1%)
	자산취득비	40,833	△23,000	-	18.7.3.	17,833	17,771	62 (0.3%)
사업비	마음건강 지원사업	300,000	-	27,813	18.7.3.	327,813	327,813	0
	일상관계 지원사업	581,336	-	24,500	18.7.3.	605,836	592,744	13,092 (2.1%)
	활동경험 지원사업	300,012	-	7,700	18.7.3.	307,712	299,179	8,532 (2.7%)
	정책연구/홍 보/네트워크	315,588	-	39,987	18.7.3.	355,575	354,178	1,396 (0.3%)

- 청년청은 회계관리가 부실하게 운용될 소지가 많은 민간위탁기관의 법령 위반 등 회계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물론,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민간위탁 사업의 자의적인 공모사업 관리 부실

-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9개 기관중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공모사업을 시행중이며, 총 9억 4백만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81.5%(7억 3천 7백만원), 불용액은 1억 6천 7백만원(18.5%)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현황〉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청년참)	367,520	310,832	56,688	15%
	청년활동지원(청년업)	134,868	67,235	67,633	50%
	청년활동지원(청년활)	176,312	155,301	21,011	12%
	청년공간지원(공간활)	94,260	78,086	16,174	17%
무중력지대 G밸리	G밸리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27,372	24,796	2,576	9.4%
무중력지대 대방동	왓에버 프로젝트	10,000	9,611	389	3.89%
무중력지대 양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4,200	4,068	132	3%
무중력지대 도봉	청년정거장	13,120	12,275	845	6.4%
무중력지대 성북	커뮤니티 지원사업	22,008	22,008	0	0%
무중력지대 서대문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소한 프로젝트>	9,500	9,500	0	0%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SEED>	15,000	15,000	0	0%
청년교류공간	이음프로젝트	18,779	18,779	0	0%
	이음발굴단	10,045	10,045	0	0%

-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음.
- 특히,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지원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의 90% 이상 사용건, 개인카드로 지출 건, 인건비 지급 건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노년유니온 지원금 정산내역〉

no.	지출날짜	비목	적요	세부내역	금액(원)
1	2018. 10. 18.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라벨지, 분필	₩24,300
2	2018. 10. 18.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세탁바구니(망태사람 게임용) 등	₩117,500
3	2018. 10. 18.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양말(1,000원) X 20	₩20,000
4	2018. 10. 19.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케이크(원) X 2 + 무 알콜샴페인(원) X 3	₩77,400
5	2018. 10. 19.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양파과자(과자따먹기 게임용) 등	₩98,540
6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타이레놀 등(단체활동 시 안전대비물품구비)	₩9,500
7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연고(단체활동시 안전 대비물품구비)	₩4,000
8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쓰레기봉투 100L (원)X2+쓰레기봉투L (원)X20	₩14,800

9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꽃다발(아이스브레이킹게임 상품)	₩20,000
10	2018. 10. 20.	식대/다과비	체육대회 식대	김밥(2,500원)X40	₩100,000
11	2018. 11. 1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굴, 두유, 과자	₩12,000
12	2018. 11. 1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식사	₩48,000
13	2018. 11. 2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빵류	₩25,550
14	2018. 11. 2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음료	₩4,500
15	2018. 11. 22.	인건비	행사 진행 사례비	000(계좌이체)	₩50,000
16	2018. 11. 27.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빵류	₩20,600
17	2018. 11. 27.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음료	₩8,700
18	2018. 12. 1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빵류	₩30,000
19	2018. 12. 23.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사과 등	₩30,010
20	2018. 12. 28.	진행비	연말 파티 재료비	카드 만들기 재료	₩28,080
21	2018. 12. 28.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과자류	₩40,040
22	2018. 12. 28.	진행비	연말 파티 재료비	케이크(선물)	₩27,900
23	2018. 12. 28.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빵류	₩33,800
24	2018. 12. 28.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식사류	₩41,000
25	2018. 12. 28.	인건비	행사 진행 사례비	000(계좌이체)	₩118,464
합계					₩1,004,684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사소한 프로젝트_한언니두베이비팀 지원금 정산 내역>

no.	지출날짜	비목	적요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1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2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3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4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5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6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7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8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9	2018.11.13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태그, 자석뚝 단추	₩51,000	개인카드지출
10	2018.11.15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가위	₩2,500	지원금 카드 지출
11	2018.11.17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12,000	개인카드지출

12	2018.11.17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12,000	개인카드지출
13	2018.11.20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3,000	지원금 카드 지출
14	2018.11.20	회의비	다과	음료	₩13,900	지원금 카드 지출
15	2018.11.20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5,000	개인카드지출
16	2018.11.20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접착제	₩4,400	개인카드지출
17	2018.11.20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12,000	개인카드지출
18	2018.11.25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콩코르레이드 커버	₩15,000	개인카드지출
19	2018.11.25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실크감광기	₩180,000	개인카드지출
20	2018.11.27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무지 손수건, 광목천, 부직포 가방	₩56,500	개인카드지출
21	2018.11.27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잉크, 목재 프레임, 감광유제 등	₩103,400	개인카드지출
22	2018.12.04	회의비	다과	음료	₩20,100	개인카드지출
23	2018.12.06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접시	₩45,000	개인카드지출
24	2018.12.11	재료비	음식 재료	모닝롤, 치즈, 계란, 음료수 등	₩112,160	지원금 카드 지출
25	2018.12.11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모양틀, 포크	₩23,100	지원금 카드 지출
26	2018.12.11	재료비	음식 재료	데코펜	₩11,000	개인카드지출
27	2018.12.12	회의비	다과	음료	₩21,600	개인카드지출
28	2018.12.12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지퍼백, 전지	₩3,000	개인카드지출
29	2018.12.12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물티슈, 위생장갑 등	₩7,500	개인카드지출
30	2018.12.22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35,500	개인카드지출
31	2018.12.22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5,500	개인카드지출
32	2018.12.23	재료비	음식 재료	캐모마일, 오렌지, 야채, 치즈 등	₩76,940	지원금 카드 지출
33	2018.12.23	재료비	음식 재료	주스, 실론티 등	₩6,200	지원금 카드 지출
합계					₩1,002,300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u>대행사</u> 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u>대행</u>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28쪽

3) 민간위탁 기관별 자산 취득의 부적정 및 서울시 물품 관리시스템 미등재 등 관리 부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과 물품 등의 재산 관리는 수탁기관의 물품 등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청 소관의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의 민간위탁기관은 동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음.
- 청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정기 지도·점검과 연계 실시)

<청년허브 서울시 자산관리대장 등재현황>

연도	품목	수량	단가	취득가액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	비고
2016	노트북	5	1,469,120	7,345,600	등재되어있지 않음	
	쇼파베드	1	159,000	159,000		
	나무시소	1	255,000	255,000		
	미세먼지 측정기	1	234,940	234,940		
	목재테이블	6	155,000	930,000		
	타블렛	1	394,840	394,840		
	외장하드	1	199,000	199,000		
	목함	1	253,000	253,000		
	집진기	1	661,700	661,700		
	그라인더	1	590,400	590,400		
	제빙기	1	1,619,900	1,619,900		
	믹서기	1	533,500	533,500		
	자동 전기물 끓이기	1	158,350	158,350		
	전자레인지	1	173,630	173,630		
	테이블	1	104,000	104,000		
	커피머신	1	7,995,000	7,995,000		
	이동식서가	1	715,000	715,000		
	이동식서가	1	776,700	776,700		
	이동식서가	1	500,970	500,970		
	냉장고	1	1,354,270	1,354,270		
무선마이크	1	160,000	160,000			
HG 꼬덕씨 베이직	1	165,000	165,000			
365 매일 생각해	1	55,000	55,000			
바람채	1	49,500	49,500			
근태관리시스템	1	12,000,000	12,000,000			
2017	원형테이블	6	60,000	360,000		
	원형테이블	2	80,000	160,000		
	의자	4	39,000	156,000		
	의자	4	48,000	192,000		
	의자	4	53,000	212,000		
	의자	5	26,900	134,500		
	의자	1	96,900	96,900		
	의자	6	49,000	294,000		
	대형선풍기	1	97,530	97,530		
	에어타카	1	59,030	59,030		
	퀵그립클램프	5	49,700	248,500		
	L클램프	4	24,630	98,520		
	유선마이크	4	99,533	398,132		
	유선마이크	2	99,534	199,068		
	노트북	2	1,268,510	2,537,020		
	사무용의자	5	276,410	1,382,050		
	빈백	2	165,000	330,000		
	빈백	4	155,000	620,000		
작업대	1	260,010	260,010			

	이동작업대	1	275,080	275,080	
	소형작업테이블	1	237,270	237,270	
	대형작업테이블	1	355,950	355,950	
	무선동조기	1	130,000	130,000	
	이동공구대	2	133,400	266,800	
	공구정리대	1	143,430	143,430	
	캐비닛	2	163,040	326,080	
	앵글	6	114,160	684,960	
	제습기	2	268,000	536,000	
	공기청정기	1	434,260	434,260	
	청소기	1	178,720	178,720	
	배풍기	1	209,260	209,260	
	드릴프레스	1	368,790	368,790	
	전동드릴	1	162,630	162,630	
	컴프레샤	1	249,810	249,810	
	직소	1	269,960	269,960	
	플린지쏘	1	698,600	698,600	
	휠체어	1	166,000	166,000	
	캐노피텐트	1	326,230	326,230	
	금고	1	259,570	259,570	
	커피머신	1	300,140	300,140	
	앰프	1	250,000	250,000	
	스피커	1	195,000	195,000	
	냉장고	1	324,000	324,000	
	공기청정기	1	1,730,000	1,730,000	
	빔프로젝터	1	1,437,720	1,437,720	
	무정전전원장치	1	377,900	377,900	
	함마드릴	1	359,140	359,140	
	무선마이크(핸드)	1	446,000	446,000	
	무선마이크(핀)	1	300,000	300,000	
	네비게이션	1	307,000	307,000	
	블랙박스	1	230,000	230,000	
	접이자발차	2	640,800	1,281,600	
	오디오믹서	1	558,000	558,000	
	아크로벳	8	497,673	3,981,384	
	아크로벳	13	497,672	6,469,736	
	MS office professional	2	445,692	891,384	
	MS office professional	2	445,693	891,386	
	한컴오피스	4	215,435	861,740	
2018	원형테이블	4	89,200	356,800	
	사각 스툴	6	45,050	270,300	
	원형 스툴	6	55,800	334,800	
	노트북	7	1,387,133	9,709,930	
	모니터	4	212,000	848,000	
	쇼케이스	1	836,950	836,950	
	멀티테이블	1	222,200	222,200	
	공기청정기	2	266,980	533,960	
	다이렉트박스	1	159,800	159,800	

라벨프린터	1	180,000	180,000	
전기포트(텔키)	2	134,940	269,880	
무선청소기	2	413,080	826,160	
전기레인지	1	133,200	133,200	
전기밥솥	1	131,040	131,040	
오븐	1	1,635,840	1,635,840	
마이크케이스	1	238,000	238,000	
오븐랙	1	279,000	279,000	
양면자석화이트보드	1	395,000	395,000	
허브랙(NERA)	1	400,000	400,000	
철재 캐비닛	1	295,120	295,120	
사각테이블	1	109,100	109,100	
ez pdf editor	19	138,600	2,633,400	
OfficeMacStd 2019 OLP NL Gov	2	462,000	924,000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자산관리대장 등재현황>

연번	자산명	취득일자	사용처	수량	서울시 물품관리 시스템 등재여부
1	문서보관용 2단 서류장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2	문서보관용 2단 서류장 3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3	문서보관용 2단 오픈장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4	문서보관용 3단 서랍장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5	자료보관용 2단 오픈장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6	자료보관용 2단 오픈장 3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7	스크린보드 1400 3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8	휴게공간 발받침대 1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9	휴게공간 발받침대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10	노트북 1	2018/10/11	센터 사무실	1	X
11	노트북 2	2018/10/11	센터 사무실	1	X
12	노트북 3	2018/10/11	센터 사무실	1	X
13	바스툴 400*480*990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4	바스툴 400*480*990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5	바스툴 400*480*990 3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6	7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7	7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8	9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9	9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0	11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1	11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2	바롤로 1인용소파 790*990*915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3	높은등받이소파 900*700*1170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4	문서보관용 4단 서류장 3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5	문서보관용 4단 하문장 4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6	문서보관용 2단 서류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7	문서보관용 2단 오픈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8	자료보관용 5단 하문장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9	자료보관용 2단 올문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0	자료보관용 2단 올문장 2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1	스크린보드 1400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2	스크린보드 1400 2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3	스크린보드 700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4	스크린보드 700 2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5	스크린보드 1400 3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6	스크린보드 1400 4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7	자료보관용 2단 오픈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8	모니터	2018/07/18	센터 사무실	1	X
39	데스크탑	2018/07/18	센터 사무실	1	X
40	제습기	2018/07/02	센터 사무실	1	X
41	모니터	2018/05/08	센터 사무실	1	X
42	데스크탑	2018/05/08	센터 사무실	1	X
43	업소용 청소기	2018/03/21	센터 사무실	1	X
44	문서보관용 4단 서류장 2-1	2018/03/21	센터 사무실	1	X
45	문서보관용 4단 서류장 2-2	2018/03/21	센터 사무실	1	X
46	사무용의자(대) 10-1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47	사무용의자(대) 10-2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48	사무용의자(대) 10-3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49	사무용의자(대) 10-4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0	사무용의자(대) 10-5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1	사무용의자(대) 10-6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2	사무용의자(대) 10-7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3	사무용의자(대) 10-8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4	사무용의자(대) 10-9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5	사무용의자(대) 10-10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6	모니터 2-1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57	모니터 2-2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58	데스크탑 2-1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59	데스크탑 2-2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60	냉장고 (소형)	2017/12/06	센터 사무실	1	X
61	사무용의자(대) 2-1	2017/11/27	센터 사무실	1	X
62	사무용의자(대) 2-2	2017/11/27	센터 사무실	1	X
63	에어써큘레이터	2017/05/02	센터 사무실	1	X
64	수납장 (하부서랍형_400)	2017/01/31	센터 사무실	1	X
65	오디오 (LG_CM2760)	2016/12/13	센터 사무실	1	X
66	프린터 (HP_레이저프로M201n)	2016/12/05	센터 사무실	1	X
67	프린터 (HP_레이저P1102W)	2016/12/05	센터 사무실	1	X
68	철제 캐비닛 (미색_세로2칸)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69	3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1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0	3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2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1	4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1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2	4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2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3	사이드테이블 (이동형)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4	상부형 수납장 (탕비용품)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5	식기건조대 (탕비용품)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6	칸막이 (서랍정리용품)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7	전동드릴세트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78	접이식의자(백) 60-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79	접이식의자(백) 60-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0	접이식의자(백) 60-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1	접이식의자(백) 60-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2	접이식의자(백) 60-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3	접이식의자(백) 60-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4	접이식의자(흑) 60-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5	접이식의자(흑) 60-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6	접이식의자(흑) 60-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7	접이식의자(흑) 60-1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8	접이식의자(흑) 60-1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9	접이식의자(흑) 60-1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0	접이식의자(흑) 60-1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1	접이식의자(흑) 60-1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2	접이식의자(흑) 60-1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3	접이식의자(흑) 60-1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4	접이식의자(흑) 60-1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5	접이식의자(흑) 60-1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6	접이식의자(흑) 60-1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7	접이식의자(흑) 60-2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8	접이식의자(흑) 60-2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9	접이식의자(흑) 60-2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0	접이식의자(흑) 60-2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1	접이식의자(흑) 60-2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2	접이식의자(백) 60-2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3	접이식의자(백) 60-2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4	접이식의자(백) 60-2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5	접이식의자(백) 60-2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6	접이식의자(백) 60-2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7	접이식의자(백) 60-3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8	접이식의자(백) 60-3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9	접이식의자(백) 60-3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0	접이식의자(백) 60-3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1	접이식의자(백) 60-3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2	접이식의자(백) 60-3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3	접이식의자(백) 60-3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4	접이식의자(흑/백) 60-3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5	접이식의자(흑/백) 60-3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6	접이식의자(흑/백) 60-3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7	접이식의자(흑/백) 60-4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8	접이식의자(흑/백) 60-4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9	접이식의자(흑/백) 60-4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0	접이식의자(흑/백) 60-4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1	접이식의자(흑/백) 60-4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2	접이식의자(흑/백) 60-4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3	접이식의자(흑/백) 60-4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4	접이식의자(흑/백) 60-4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5	접이식의자(흑/백) 60-4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6	접이식의자(흑/백) 60-4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7	접이식의자(흑/백) 60-5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8	접이식의자(흑/백) 60-5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9	접이식의자(흑/백) 60-5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0	접이식의자(흑/백) 60-5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1	접이식의자(흑/백) 60-5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2	접이식의자(흑/백) 60-5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3	접이식의자(흑/백) 60-5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4	접이식의자(흑/백) 60-5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5	접이식의자(흑/백) 60-5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6	접이식의자(흑/백) 60-5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7	접이식의자(흑/백) 60-6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8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9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0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1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2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3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4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5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6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7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8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9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0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1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2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3	가습기 (위니아) 5-1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4	가습기 (위니아) 5-2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5	가습기 (위니아) 5-3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6	가습기 (위니아) 5-4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7	가습기 (위니아) 5-5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8	프로젝터 (이동용가방 포함) 2-1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9	프로젝터 (이동용가방 포함) 2-2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60	카메라 (캐논EOS-750D)	2016/10/12	센터 사무실	1	X
161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2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3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3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4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4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5	보조책상(1200*30)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6	회의의자 (고정형)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7	회의의자 (이동형) 8-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8	회의의자 (이동형) 8-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9	회의의자 (이동형) 8-3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0	회의의자 (이동형) 8-4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1	회의의자 (이동형) 8-5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2	회의의자 (이동형) 8-6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3	회의의자 (이동형) 8-7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4	회의의자 (이동형) 8-8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5	원목테이블 (1600) 4-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6	원목테이블 (1600) 4-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7	원목테이블 (1600) 4-3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8	원목테이블 (1600) 4-4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9	양문형 수납장 (800) 2-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80	양문형 수납장 (800) 2-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81	단문형 수납장 (400)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82	데스크탑(모니터포함)_디자인용	2016/08/23	센터 사무실	1	X
183	데스크탑(모니터포함)_사무용	2016/08/23	센터 사무실	1	X
184	사무용책상(1200) 16-1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5	사무용책상(1200) 16-2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6	사무용책상(1200) 16-3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7	사무용책상(1200) 16-4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8	사무용책상(1200) 16-5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9	사무용책상(1200) 16-6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0	사무용책상(1200) 16-7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1	사무용책상(1200) 16-8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2	사무용책상(1200) 16-9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3	사무용책상(1200) 16-10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4	사무용책상(1200) 16-11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5	사무용책상(1200) 16-12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6	사무용책상(1200) 16-13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7	사무용책상(1200) 16-14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8	사무용책상(1200) 16-15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9	사무용책상(1200) 16-16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200	사무용의자(대) 16-1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1	사무용의자(대) 16-2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2	사무용의자(대) 16-3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3	사무용의자(대) 16-4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4	사무용의자(대) 16-5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5	사무용의자(대) 16-6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6	사무용의자(대) 16-7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7	사무용의자(대) 16-8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8	사무용의자(대) 16-9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9	사무용의자(대) 16-10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0	사무용의자(대) 16-11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1	사무용의자(대) 16-12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2	사무용의자(대) 16-13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3	사무용의자(대) 16-14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4	사무용의자(대) 16-15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5	사무용의자(대) 16-16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6	테이블 및 수납 (전자렌지)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7	테이블 및 서랍장 (사무용품정리)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8	냉장고	2016/08/12	센터 사무실	1	X
219	문서 세단기	2016/08/12	센터 사무실	1	X

-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중 불법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400	402 민간자본이전	<p>03. 민간위탁사업비</p> <p>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p>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35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³⁾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⁴⁾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3)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4)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예산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임.
-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년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계획 변경 및 과도한 불용과 불필요 하거나 불법적인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청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제도개선 필요 사업

1)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부실관리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문제 및 공공문제를 민간의 혁신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 동 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14개 단체에 2개년 동안 보조금 85억원을 지원하였음.
- 2017년 동 사업(편성예산 50억원)의 집행률은 68.5%(33억4천2백만원)였으며, 2018년 집행실적은 65억 9백만원 중 91.3%(59억 4천만원)를 집행하였다고 하나, 일부는 아직도 “정산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2017년, 2018년 사업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	(x-) 5,000,000	사무관리비	(x-) 350,000	(x-) 334,264	(x-) 15,736
		민간경상보조	4,650,000	3,091,602	1,558,398
2018	(x-) 6,509,123	사무관리비	(x-) 509,000	(x-) 497,592	(x-) 11,408
		민간경상보조	6,000,123	5,442,674	557,449

〈2017년, 2018년 사업집행 실적〉

(단위 : 원)

연번	연도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1	(주)어반플레이	2017	132,250,000	121,595,050	10,654,950	10,654,950	
		2018	240,250,000	238,113,620	2,136,380	2,136,380	
2	라섬 외1	2017	187,038,860	168,522,304	18,516,550	18,516,550	
		2018	456,645,510	435,100,762	21,544,748	21,544,748	
3	(주)인라이튼	2017	168,250,000	140,056,928	28,193,070	28,193,070	
		2018	286,500,000	274,512,691	11,987,309	11,987,309	
4	(주)트리플래닛	2017	328,864,000	290,081,967	38,782,030	38,782,030	
		2018	446,932,920	400,160,481	46,772,439	46,772,439	
5	(주)엔피프틴	2017	192,700,000	159,620,642	33,079,350	33,079,350	
		2018	277,260,000	170,373,131	106,886,869	106,886,869	

6	피치마켓	2017	103,060,000	100,460,840	2,599,160	2,599,160	
		2018	305,440,000	302,179,606	3,260,394	3,260,394	
7	(주)에이치 지이니셔티브	2017	231,702,040	205,577,407	26,124,630	26,124,630	
		2018	388,544,790	352,674,058	35,870,732	35,870,732	
8	레이즈지엘 에스(주)	2017	298,986,470	281,109,485	17,876,980	17,876,980	
		2018	440,126,260	374,021,024	66,105,236	66,105,236	
9	(주)케이오 에이	2017	118,500,000	107,733,406	10,766,590	10,766,590	
		2018	228,287,000	228,233,768	53,232	53,232	
10	(주)마인드 디자인	2017	264,737,740	254,419,443	10,318,290	10,318,290	
		2018	260,521,570	257,566,140	2,955,430	2,955,430	
11	(주)프렌트 랩	2017	243,212,120	185,090,923	58,121,190	58,121,190	
		2018	657,805,000	611,469,611	46,335,389	46,335,389	
12	(주)위누	2017	211,827,610	183,598,608	28,229,000	28,229,000	
		2018	374,013,520	365,217,186	8,796,334	8,796,334	
13	(주)터치 포곳	2017	84,000,000	66,545,008	17,454,990	17,454,990	
		2018	154,300,000	124,287,483	30,012,517	30,012,517	
14	세어하우스 우주(주) 외1	2018	411,849,000	392,574,672	19,274,328	19,274,328	
	다음세대 재단& 언더독스 주식회사	2018	512,198,000	393,682,748	85,602,502	-	정산중

○ 동 사업은 2017년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 검토보고시 의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 보조금 중단이후에 지속적인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보조금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인 점, 인건비 등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 없이 교부할 수 없는 문제, 유사 보조금 사업 과도 문제 등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제시한 문제점 및 시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1) 청년프로젝트 1기 피보조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1기 피보조 사업자는 (주)엔피프틴 등 14개 업체임. 보조금 지원 성격이 업체가 아닌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민간 업체에 대출

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금이므로 해당 업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1기 사업 보조사업자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을 보면 기업의 성장가능성 차원에서 과연 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이 적절하였는지 의문임.

2) 청년프로젝트 투자 2기 사업구조의 타당성

2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기획관리기관 전문업체인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지원할 피보조기관에 재교부 하는 구조임. 이러한 구조로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는 2기 지원 대상 프로젝트 16개 팀에 445백만원을 재교부하였음.

피보조 사업자가 제2의 피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특이한 사업방식은, 서울시와 다음세대가 작성한 협약서 제23조, ‘보조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협약서 내용처럼 다음세대가 제2의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 함에 있어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3) 2019년도 예산 편성을 가정한 협약서 체결의 정당성

전술한 바처럼 청년정책담당관은 동 사업의 기획관리를 위해 다음세대와 총 58.9억원(사업기간: 협약일~2019.12.31.) 약정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그 날짜가 2018년 9월 20일로, 이때는 2019년 예산안이 전혀 확정된 시점이 아니었는바, 예산 배정 전 지출원인행위를 금지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임.

사업부서는 협약서에 ‘2019년 교부액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2018년 사업평가 및 제제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명기했다고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을 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봄.

4) 청년프로젝트 투자 3기 사업 설계의 타당성

2기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비교 검토해보면, 2기 사업은 사실상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음. 당초 기획·검증 단계를 거쳐 성장·지원 단계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장·지원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

2기 사업 실패의 원인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3기 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기획관리 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타당성

다음세대의 2기 사업 기획관리 업무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니라, 동 사업의 관리를 위한 운영 또는 위탁으로 보아야 하나 이를 실제 지원업체와 동일한 선상에서 민간보조금(307-02)으로 집행하였음.

사업부서의 이러한 사업 설계가 예산의 편성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의문임. 참고로 1기 및 3기 사업의 기획관리 업무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했거나 추진중임.

6) 기타사항

기획관리 수행기관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언더독스(주)는 벤처캐피탈 업체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의 피보조기관 자격으로 2018년 보조금 100백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음. 서울시가 추진하는 혁신형 사업에 동일업체가 하나는 지원 대상 업체로, 하나는 지원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자격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일반상식에 어긋남.

〈시정권고〉

전반적으로 동 사업이 서울시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임.

상기 [현황 및 문제점]에서 제기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피보조사업자가 제2의 피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예산 및 계약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상기 6)번에서 기술한 언더독스(주)의 사례 이외에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피보조기관 중의 하나인 엔피프틴(2018년도 교부금 2.8억원)의 경우,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 ‘디지털 대장간’ (위탁금 360백만원)과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용산전자상가 운영’ (용역비 280백만원) 수행업체임.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많은 청년기업들에게 기회가 고루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깊은 고려가 필요함.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07~112쪽 재구성

- 동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했으며,
- 2018년도에는 14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바도 있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사업 집행을 하였음.

-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미비한 사업임에도 2019년에도 2018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18년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언더독스(주)는 벤처캐피탈 업체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의 피보조기관 자격으로, 2018년 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로 서울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단체임.
- 청년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 이중 수령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서울시의 사업이 특정 단체에게 특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중단을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성인지 결산서 성과목표 설정 및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설정하여 실적 달성을 명확하게 분석·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음.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불특정 사업 목록〉

연번	실국	사업명
1	청년청	서울 청년활동 보장
2	청년청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81쪽 재구성

※ 성인지결산제도는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13회계연도부터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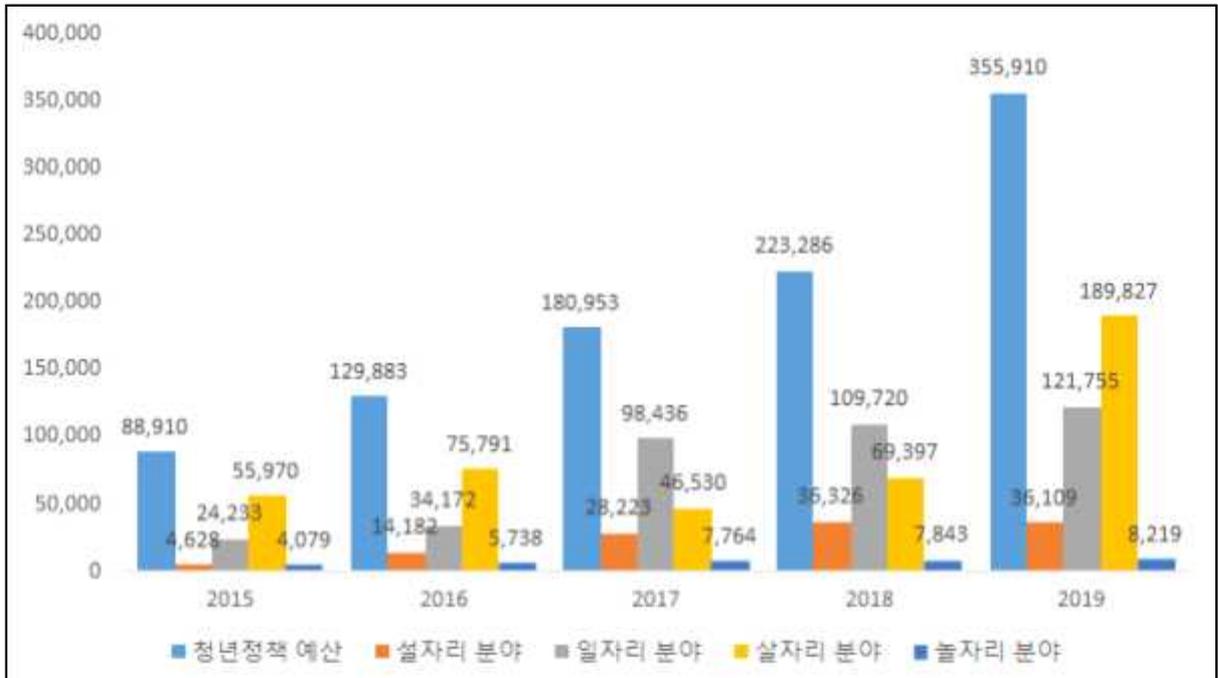
○ 또한,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의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효과성 검증 없는 청년정책의 사업예산 증액 등 관리 부실

○ 2018년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제32호, 2019년 4월)”에 따르면 해마다 청년 관련 예산이 서울시 전체 및 다른 개별 사업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만족도 조사 이외의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예산 연도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 자료: 서울시 청년청(2019)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재구성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서울시는 청년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를 5회 실시하였는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⁵⁾ 2회, 좌담회 형식의 청년 인식조사 1회, 청년정책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 분석 2회 등이 진행되었으나,

-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는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고용 지표 연구·개발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효과 검증을 통한 사업효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5)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활용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청년청이 (2019.1.1.)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청 자체사업의 범위만 확대될 뿐 서울시 청년정책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이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는바,
 -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 기획 및 조율 등 역량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예산비용 과다 사업 검토

- 청년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년드림센터 조성” 사업은 서남권 청년의 일자리·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청년밀집지역인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종합활력공간(가칭)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전액(100%) 불용처리하였음.

- 2018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2017년 2월~8월) B/C분석 결과는 0.81로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 대상 부지의 차고지 이전이 계획만 수립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림차고지 이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보류되어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음.
 - 동 사업의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긴급한 사업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여 재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하겠음.
- 또한,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에서 5억 5천 7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9.3%),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 2억 9백만원(이자보전금, 12.2%),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에서 1억 4천 6백만원(기타보상금, 0.7%),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에서 4천 1백만원, (사무관리비(2천 6백만원, 37.0%), 공공운영비(530만원, 53.8%), 감리비(1천만원, 27.6%))을 불용처리했으며,
 - 민간위탁기관의 불성실한 예산 집행 등으로 인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금)” 1억 2천 5백만원(3.7%)을 불용처리했음.
- 청년청은 청년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하되, 무리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정확한 추계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책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를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억원이상 또는 20%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2017년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자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603,000	261,856	341,143	56.6%	○ 당초 사업설계 시 보다 실제 접수자가 적어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이 발생
	서울 청년활동 보장	기타보상금	15,000,000	14,119,000	881,000	5.9%	○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650,000	3,091,602	1,558,397	33.5%	○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TF구성/운영, 집행지침마련, 주관기관 선정, 선정심사(3개월 소요) 등) 이행으로 보조금 사용기간 축소 및 교부액 조정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금	4,539,000	4,041,135	497,864	11.0%	○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299,000	169,512	107,348	35.9%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96,000	3,819	192,180	98.1%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782,780	553,762	229,017	29.3%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

연도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시설비	1,398,000	250,319	130,012	9.3%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 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50,000	1,704	48,295	96.6%	○ 청년단체 의견수렴에 따른 위치 및 (상암DMC Soplex → 망월동)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시범운영비 예산절감 불용
2018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차 지원	사무관리비	2,600	1,500	1,100	42.3%	○ 홍보비 및 회의비 등을 절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차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3,808	992	20.7%	○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서면진행 등으로 업무추진비 절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차 지원	이차보전금	1,724,200	1,514,285	209,915	12.2%	○ 학자금대출 이차율 감소로 지원금액 감소 (19년 하반기부터 기준대출입 후 2년 이내 > 5년 이내로 확대 예상) (조례개정 완료)로 지원인원 증가 예상
	서울 청년활동 보장	기타보상금	21,000,000	20,853,500	146,500	0.7%	○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임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3,395,657	3,270,123	125,534	3.7%	○ 계약심사 절감액 83,024천원(절감률 2.72%) ○ 중도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미교부 및 사업 집행잔액 발생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123	5,442,674	557,449	9.3%	○ 주관기관 사업컨설팅에 따른 예산 절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72,139	45,475	26,664	37.0%	○ 무중력지대 신규4개소(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개관연기 및 무중력지대 강남 착공 연기에 따른 불용발생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0,000	4,616	5,384	53.8%	○ 무중력지대 강남 시범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책정했으나, 착공연기에 따른 불용발생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감리비	36,218	19,739	10,000	27.6%	○ 무중력지대 서대문(홍제) 리모델링이었으나 50+센터 조성공사와 같이 감리용역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 발생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	사무관리비	50,000	-	50,000	100.0%	○ 청년드림센터 부지는 현재 차고지로 이용중이고 그 차고지가 신림차고지로 이전 공사 이후 청년드림센터 조성가능하나, 신림차고지 이전공사구역이 지연됨에 따라 기획추진사업 구역이 보류되어 불용

의사지원팀장 : 박희숙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 자료 1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2017년)

1

점검 개요

목 적

- 청년허브 재위탁 추진에 따라 그간 사업운영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성과, 개선방안 마련 등 제2기 청년허브 운영(2018.1.~2020.12.)에 적극 반영
- 청년허브 민간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주요 시설물, 물품, 사무실 등에 대한 점검 실시로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보수, 변상 등 대응책 마련

점검사항

- 점검기간 : 2017.11.29.~12.6.(기간 중 3일)
- 점검자 : 정00(청년정책팀장), 박00, 류00, 최00
- 점검내용 : 사업운영 전반(추진실적 및 적절성, 복무, 인사, 물품, 회계 등)
 - 0 위탁사무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사업의 적절성, 각종 위원회 현황 등
 - 0 복무, 인사, 물품, 회계, 수입금 처리 현황 등 적정성, 보안 및 사고예방 계획 수립여부 등
 - 0 퇴사인원 및 사유, 직장교육(성희롱예방, 인권교육 등) 등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 점검방법 : 3인 1조로 청년허브 운영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
 - 0 자료 사전제출로 현장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단축 및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
 - 0 부적정 사례 발견(인지)시 관련자 사유서 및 확인서 징구 후 필요한 조치 이행
- 추진근거
 - 0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0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총 평

- ◆ 청년허브는 12.12 개관 이후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을 위한 시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진로모색, 학습경험 ▲자립공존, 공간활동 ▲사회협력, 이슈공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 각종사업은 운영규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심의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 ✓ 민간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은 체계적 선정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기획형으로 지원한 단체의 경우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근거도 미흡
 - ✓ 청년학교, 국제컨퍼런스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해외출장의 경우 목적과 예산 과목의 불일치, 특정직원의 장기해외출장, 출장 후 결과보고 미이행, 직원과 단체 대표 위주의 출장 등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마련이 시급하며, 잘못 지급된 출장비 회수 및 인사상의 조치 필요
- ◆ 청년허브의 각종 물품, 시설 등은 관련 법령에 맞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파손된 물건을 EPS실에 임의방치하고 물품도 일부 분실되는 등 물품 및 시설 관리 부적정에 따라 재물조사 실시 후 즉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 청년허브는 그동안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허브 책임직(前센터장, 기획실장, 경영실장)의 사업 운영 소홀 등 직무태만에 따라 형식적 사업운영, 직원복무관리 및 물품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조치계획

- 조치기관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청년문화원)
- 조치사항 :
 - 0 인사상 조치사항 : 경고 1건, 주의 3건
 - 0 금전상 조치사항 : 회수 1건 1,577,510원, 변상 1건, 1,196,420원
 - 0 제도개선사항 : 연간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 등 3건
 - 0 현지조치사항 : EPS(서버관리)실 관리 소홀 1건

□ 사업운영부문

①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관리 부적정

- 0 청년허브 운영규정에 따라 청년허브 운영계획의 수립,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허브 센터장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청년허브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청년허브 운영규정 제5장)
- 0 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위원, 청년활동단체, 협력단체, 내부직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연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 11월말 현재까지 '17. 신규위원 등을 반영한 청년허브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 ※ '붙임2' 참조
- 0 이는 책임직(센터장, 기획실장, 경영실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직원의 인사상 조치(주의)**

② 민간청년활력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사업 운영 부적정

가. 단체선정 부적정

- 0 민간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공간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2016년부터 청년허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단체에 대해 **최대 5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원 하고 있음.
- 0 이에 따라 청년허브는 2017년도 연속지원단체 선정을 위하여 2016년도에 선정된 11개 단체 중 8개의 단체에 대한 연장심사를 위해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접수(2017.4.15.~4.21.), 현장방문(4.25.~4.26.) 및 대면심의(4.27.)를 통해 최종 8개 단체를 선정하여 **전체 30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음
- 0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9ROAD', '이글루 망원'의 경우 5명의 심의위원 평균 점수가 69.2점**으로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사업비의 집행중단 및 협약의 해지)에 따라(70점 이

하) 사업비의 집행중단 및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없이 선정하여 각각 25백만원, 27백만원 총42백만원을 지원(5월)하는 등 단체선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사업비의 집행 중단 및 협약의 해지)

1. 추진기관은 다음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협약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해 사업비의 집행중단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사업의 평가결과 “미흡(70점 이하)”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 특히,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신규(기획형)의 경우 선정을 위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현장방문 및 서면심의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즉시 보완 조치하고 선정과정, 단체관리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관련직원은 인사상 조치(주의)

나. 사업관리 소홀

0 민간청년활력공간 선정단체는 청년활력공간 운영지침(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05129, 2017.5.12.)에 따라 최종 선정 결과 1월 이내 지원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간운영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지원단체는 미션 수립 워크숍(가칭)에 참가하여 공간운영계획을 보완 및 확정한 후 청년허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0 청년허브는 민간청년활력공간 지원단체 선정을 위해 ‘제안(지원단체)→심의 결정(청년허브)→사업 계획 승인요청(선정단체)→검토 및 지원(청년허브)’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에 필요한 공간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을 생략하고 담당자 단독으로 최종 검토 및 지원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 또한 지원단체 선정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주기적 방문 및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의 내실화가 이루어 져야 하나 담당자의 방문 면담으로 갈음하는 등 사업관리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민간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의 선정과 관리, 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직원복무 관련

○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한 장기간의 해외출장 등 복무관리 소홀

0 직원 해외출장은 사업목적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무규정 등에

따라 출장이후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행하고 있으며, 청년학교 수입금 등은 청년학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외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함에도 직원 해외출장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부적정 사용 발생

〈표1 : 청년허브 개인별 출장내역(2017.1.1.~11.30.)〉

연번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결과 보고서	출장비액 (원)	예산과목	비고
1	송00	4.14.~4.17.	일본	삶의 재구성 사전탐방	○	1,711,080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 진행비	0
2	송00	6.1.~6.12.	일본 이탈리아	기획탐방	×	1,577,510	활동가교육 기획개발자 양성과정 (수입금)	회수
3	송00 차00	6.11.~6.28.	핀란드, 독일	해외청년활동 및 정책관련 기관방문	×	3,633,601 3,096,321	국제컨퍼런스 현장탐방 및 캠프진행비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4	김00 정00	7.21.~7.25	홍콩	청년학교 참여	×	551,703 578,403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 진행비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5	송00	11.2.~11.9	일본	청년학교	×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 진행비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6	서00 차00 최00 김00 ※ 학생(3명)참여	11.30.~12.3	일본	공공건축학교	×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진행비 (수입금)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 연간 해외출장계획은 사전에 수립하여 동일지역, 유사출장의 경우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청년학교 수입금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청년학교 참가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추진
- 출장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표1 청년허브 개인별 출장내역'의 2~5번의 출장건에 대해 출장보고서를 즉시 보완조치 하고 출장의 목적과 결과보고가 상이할 경우 전액 회수 조치
- 송00(6.1.~6.12. 일본, 이탈리아)건은 출장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해당 월에 출장이 장기간(6.1.~6.28.)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6월 이후 현재까지 출장결과보고를 결행한 것은 잘못이니 해당 직원은 인사상 조치(경고)하고 잘못 지급된 출장비 금 1,577,510원(금일백오십칠만칠천오백일십원)은 즉시 회수조치

□ 물품관리부분

○ 시설 및 물품관리 부적정 운용

- 0 청년허브에서 운용하는 비품은 비품분류번호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재 후 현행으로 관리하고, 비품별 정수운용기준을 수립하여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0 이중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매년 12.31.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하여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정비, 변상,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0 2016. 6.9. 불용처리⁶⁾ 보고(서울특별시 청년허브02998, 2017.6.9.)만 있을 뿐 2014.~2016까지 높낮이 히터 등 총18개 품목 56개의 비품, 장부가액 7,914천원의 비품을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내부보고 없이 **임의폐기**하였으며
- 0 비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리본형 책상, 공기순환기**는 현재까지 분실된 상태로 분실품에 대해서는 즉시 **변상조치**(2종, 1,196,420원⁷⁾)하고 담당자는 인사상 조치(주의)

〈표2 : 비품분실현황(2017.12.12.현재)〉

연번	품명	취득일자	취득가격	내용연수	현재가액	정수	현품	차이
1	리본형책상	2013. 3.4.	194,000원	8	78,810	44	32	△12
2	공기순환기	2015.11.9.	178,470원	7	125,350	4	2	△2
계	2종	0	0	0	0	48	34	△14

- 0 EPS실은 청년허브의 주요 전기시설과 메인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기기의 훼손과 고장 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폐품 등을 임의 방치하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었던 바 즉시 시정할 것

□ 직원교육부분

○ 직원인권교육은 다수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0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직원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가, 병가, 출장 등의 직원은 교육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0 이에 따라 직원의무교육인 인권교육의 경우 전직원이 참여(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강좌 개설, 교육확대** 등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6) 사무용책상 17개 네이버 기증물품, 기증재산가 4,250천원

7) 품목별 현재가액(내용연수에 비례한 연도별 감가상각한 가액) × 부족수량의 합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2018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인 청년허브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점 검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12.7.~12.13.(기간 중 2일)
- 점 검 자 : 청년정책팀장 외 2명
- 점검방법 : 청년허브 위탁사무 전반 점검
- 점검내용 : 일반운영, 운영성과
 -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수입금 관리 등 적정성
 - － 인사(공개채용, 경력산정 등),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복무, 급여 등
 - － 물품 및 시설관리, 보안 및 사고예방, 직장교육, 퇴사인원 및 사유 등
 - －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시설현황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舊질병관리본부 1동 1층
- 시설규모 : 건물공간 사용면적 1,881 m^2 (다목적홀, 창문카페, 미단이 사무실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연세대학교, '18.1. 1.~'20.12.31.위탁기간 3년)
- 조 직 : 4팀 25명

2

주요사업 성과

□ 사업 추진실적

○ 청년문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및 협력 증진

- 청년 활동의 다양성 보장에 기반한 서울청년거버넌스(청정넷, 청년의회) 운영
(청정넷 358명, 서울청년의회 129명 운영,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 제안)
- 현장 경험에 기반한 청년정책 이슈 발굴 및 실효성 높은 정책연구 추진
(서울형 깎이어 지원방안 기초연구 등 10건)

○ 다양한 경험 축적 및 경로 탐색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 창의적이고 유연한 소규모 커뮤니티(292팀) 및 개인·그룹(12개팀) 지원
- 청년활동 공간 지원(5개) 및 청년직업실험(13개팀) 지원
- 청년당사자와 활동가 교류(공간이용자 교류회, 활동교류회 등 500여명)
- 청년창의교육프로그램(N개의 학교) 운영(5회, 20명)

○ 청년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자원 발굴 등 협력체계 구축

- 청년문제의 이해 도모를 위한 N개의 공론장 운영(16개 주제)
- 사회적 자원 발굴 및 해외 유관 단체·기관 교류협력(2회)
-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상생교류사업(1개 자치단체) 운영

□ 사업비 집행현황('18.11.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사회적 이해와 공감 확대	750	531	71%
협업에 기반한 공공플랫폼 조성	1,030	689	67%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293	95	32%
계	2,073	1,315	63%

□ 사업운영 분야

①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관련 사업관리 부적정

- 청년허브는 운영규정에 따라 청년허브 사업계획, 예산 등 센터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청년허브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현재 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위원, 청년활동단체, 협력단체, 내부직원 등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나, 일부 위원의 경우 청년허브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을 직접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② 청년허브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미흡

- 청년허브 기획연구의 경우, 연구의 적정성, 연구범위, 활용용도 등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방지, 정책수요 반영, 신규 정책 발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기획연구 과제가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신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한 후, 연구 전년도에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 필요
- ※ '18년 기획연구 과제 10건 대부분이 연초에 미리 계획되지 않은 과제임

③ 청년허브 대관절차 부적정

- 청년허브는 청년허브 대관규정 제5조에 따라 대관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관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일정의 수용가능성·행사 내용 등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청년허브 대관심의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절차(최소한 내부 검토 및 결재 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 인사 및 복무관리 분야

① 청년허브 채용시험 관련 서류전형절차 부적정

- 청년허브는 직원 공개채용 시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인원의 2~4배수 인원으로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2차 필기 및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서류전형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활동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기준 및 배점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사표에 총점만 기재하고 있어 향후 서류전형 심사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② 청년허브 직원 경력산정기준 부적정

- 청년허브는 운영규정 별표 '경력환산기준표'를 근거로 환산 경력과 호봉을 산정하고 직원 연봉액을 결정하고 있음
- 실제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모든 직원이 업무동일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경력(80~100%)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환산기준 등 개선조치 필요

③ 근로계약서 법인 명의 변경 필요

- 민간위탁조례 제2조에 따르면 수탁자 명의로 책임하에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위·수탁협약서의 수탁자 명의를 기재하고 수탁기관 대표자의 기명·날인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청년허브는 근로계약서를 청년허브 센터장 명의로 하고 있어, 센터장 명의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수탁 법인 명의로 변경 조치 필요

④ 초과근무 등 관리 철저히 주52시간 근로시간 개정 준수

- 근로기준법 개정('18.7.1.시행)으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주52시간 모니터링 결과, '18.8월 일부 직원이 주말 행사 등으로 주52시간 초과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불필요한 초과근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노력 필요

□ 물품 및 시설관리 분야

○ 물품관리 부적정

- 청년허브에서 운용하는 비품은 비품분류번호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재 후 현행으로 관리하는 등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현장점검시 자산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물품사용,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대상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정기·수시 재물조사 실시하는 등 재물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



< 물품 보관창고 일부 >



< 물품 창고선반>